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358,159,880	10,744,796
일반회계		327,569,778	9,827,093
특별회계		30,590,102	917,703
기타특별회계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07,885	24,237
	새마을소득사업운영·관리특별회계	1,124,168	33,725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07,222	24,217
	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28,000	15,840
	주차장특별회계	289,105	8,673
	수질개선특별회계	26,632,622	798,979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401,100	12,03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'세입·세출 예산'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'계속비 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179,66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.